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5-5호

「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5년 3월 10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##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

### 1. 제안이유

- 가. 현수막은 대다수가 환경에 부담을 주는 비친환경적인 소재로 제작되고 있어 폐기 후에도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.
- 나.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, 폐현수 막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며,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 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다.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라.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, 안 제7조)
- 마. 포상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
### 3. 조례안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: 2025. 3. 10. ~ 2025. 3. 17.(7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  
          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6067, 팩스 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부.  
      2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##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현수막”이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.
2. “친환경 소재”란 생분해, 산화생분해,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,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.
3. “재활용”이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고흥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(이하 “친환경현수막사업등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친환경현수막사업등에 대한 지원
2.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
3.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
4. 그 밖에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
제4조(사업자의 책무) 사업자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

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)**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고흥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하게 할 수 있다.

**제6조(재정 지원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
2.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

**제7조(협력체계 구축)** 군수는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,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
**제8조(포상)** 군수는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「고흥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참고 1

## 관계 법령

### 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3조(옥외광고물의 분류)** 옥외광고물(이하 “광고물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

7. 현수막: 천·종이·비닐 등에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, 지주,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

### ☐ 폐기물관리법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7. 5. 17., 2009. 6. 9., 2010. 1. 13., 2010. 7. 23., 2015. 1. 20., 2017. 1. 17.>

7. “재활용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

- 가. 폐기물을 재사용·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·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
- 나. 폐기물로부터 「에너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

### ☐ 환경정책기본법

**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존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 <개정 2021. 1. 5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 <개정 2021. 1. 5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1., 2021. 1. 5.>

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,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2. 1., 2021. 1. 5.>

**제5조(사업자의 책무)**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.

**제10조(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·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.

[붙임 2]

##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 
활성화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 \_\_\_\_\_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 \_\_\_\_\_

○ 전 화 번 호 : \_\_\_\_\_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